

전략물자 불법수출범죄 대응방안

A Study on Illegal Export Crime of Strategic Items and Countermeasure

전략물자 불법수출범죄 대응방안

A Study on Illegal Export Crime of Strategic Items and Countermeasure

치안정책연구소 범죄수사연구실

연구관 정웅

목차

I. 서론

II. 세계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구조와 동향

1. 국제 비확산체제와 주요국의 수출통제제도
2.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최근 동향

III.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1. 전략물자 수출통제관련 법제
2. 대북 전략물자 반출 규정 및 절차

IV. 불법수출 실태

1. 주요 검거사례
2. 전략물자 불법수출범죄 대응에의 함의

V. 결론: 불법수출범죄 대응방안

참고문헌

1. 서론

테러와 전쟁위협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전략물자가 적대국가로 수출되어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를 위태롭게 할 경우 그러한 거래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경제적 목적을 떠나 국가존립을 위한 당연한 조치라 할 수 있다. 국가안보를 위한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GATT/WTO 협정에서도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데, 이는 경제적 효율성과 같은 자유무역체제의 장점도 국가안보에 우선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 사태는 미국인의 안보인식은 물론이고 사람과 상품의 국제적 이동에 관한 세계 각국 및 국제 규제체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미국은 이라크와 이란 및 북한을 ‘악의 축’(axis of evil)으로 규정하고 쿠바, 리비아, 시리아 등을 ‘불량국가’(rogue states)로 지정하여 자국의 수출규제법규를 위반한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대량파괴무기(WMD) 비확산체제를 더욱 강화시키려고 노력해왔다.

2006년 1월 26일 스위스의 다보스에서 개막된 세계경제포럼은 원유가 폭등, 전염병 확산, 기후변화와 함께 테러리즘을 지구촌을 위협하는 4대 핵심 키워드로 선정하였으며, 세계관세기구(WCO)는 테러와의 전쟁을 각국 세관의 최우선 과제로 권고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2003년 북한이 국산 사린가스(대량살상용 화학무기)의 주원료인 시안화나트륨을 태국기업을 통해 대량으로 구입하려다 미국 PSI 감시체제의 개입과 태국소재 한국대사관의 개입으로 무산됨으로써,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중요성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대외무역관련 기관에서는 전략물자 수출통제법규의 제정과 시

행과정에서 기업으로 하여금 새로운 수출통제 품목 및 절차규정을 올바르게 숙지케 함으로써 불법수출사범의 양산을 방지해야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청과 세관 등 단속기관에서도 통상안보의 확보와 안정적 대외무역의 발전을 위해 전략물자 불법수출범죄를 차단함으로써 탈법 위험을 최소화해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II장에서 세계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구조, III장에서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를 살펴보고 IV장에서 전략물자 불법수출의 실태를 분석한 후 마지막 V장에서 경찰의 불법수출범죄 대응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II. 세계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구조와 동향

1. 국제 비확산체제와 주요국의 수출통제제도

전략물자란 무기류와 무기류의 제조·개발에 이용가능한 민수용 기술이나 물품(이중용도물품)으로서 우려 국가 또는 단체에 이전될 경우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무역거래가 제한되는 기술과 물품을 말한다. 이러한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통제 체계들을 국제·국내법 체계를 포괄하여 법제도주의적 시각에서 정의해보면,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란 핵무기, 생화학무기, 이들 무기의 운반수단인 미사일 등의 대량살상무기, 재래무기 및 이중용도품목에 대한 국제적인 비확산체제(non-proliferation regime)와 각국의 국내법체제로 정의될 수 있다.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와 관련된 국제적 비확산체제의 범주에는 국제비확산협약과 다자간 수출통제체제가 포함된다. 먼저 국제비확산협약에는 핵비확산조약(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생물무기금지협약(BWC: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및 화학무기금지협약(CWC: Chemical Weapons Convention) 등 3개의 국제비확산협약이 있다<표 2-1>.

동 조약들은 핵, 생·화학무기와 같은 대량파괴무기의 확산을 금지하거나 폐기하는 등 이전(transfer) 금지와 군축(disarmament)에 역점을 두고 있으므로 엄격한 의미의 수출통제와는 다소거리가 있으나 이후 출범한 다자간 수출통제체제들이 동 조약들의 실질적인 이행체제라는 점에서 비확산체제의 제1선이라고 부를 수 있다.

<표 2-1> 국제 비확산협약

구 분	발효 년도	참여국 수	한국 참여 년도	주요 규정
핵비확산조약 (NPT)	1970	188	19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비보유국이 핵개발이나 이전 등을 통해 새로운 보유국이 되는 것을 방지(수평적 확산방지) - 핵보유국내 핵무기증가, 핵무기 기술발전, 핵실험, 비보유국에 대한 핵무기·기술양여금지(수직적 확산방지) - 비핵국의 비핵지대 결성권리 인정
생물무기금지협약(BWC)	1975	155	18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물무기의 개발·생산·비축 금지 - 협약발효 9개월 이내에 보유하고 있는 병원균, 독소, 장비 및 운송수단의 폐기 또는 평화적 목적으로 전환
화학무기금지협약(CWC)	1997	181	19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무기의 생산·비축·사용 전면 금지 - 협약발효 이후 10년 이내인 2007년까지 지구상의 모든 화학무기의 폐기

주: 1) BWC, CWC 참여국 수는 2006년 11월 기준.
 자료: 전략물자관리시스템, <http://www.yestrade.go.kr>(검색일: 2008. 5. 29); 전봉근, 2005.

국제적 비확산체제의 범주에는 국제 비확산협약과 함께, 비확산협약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비확산체제로서 다자간 수출통제체제가 포함된다.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에는 핵무기 수출통제와 관련해서 핵공급그룹 및 쟁거위원회(NSG: Nuclear Suppliers Group, Zangger Committee), 생물화학무기와 관련해서는 호주그룹(AG: Australia Group), 미사일기술 수출에 관련해서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대량살상무기를 제외한 통상적인 재래무기와 이와 관련한 이중용도품목 및 기술에 대한 통제체제로 바세나르협정(WA: Wassenaar Arrangement) 등의 다자간 통제체제가 운영되고 있다<표 2-2>.

다자간 수출통제체제는 국제 비확산협약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됨에 따라 전략물자 공급능력을 갖추고 있는 국가들이 모여 각각 해당 분야의

수출을 자발적으로 규제하기로 약속한 협의체이다. 이 체제의 특징으로는 첫째, 강제적 구속력이 없는 자발적 다자간 비공식 협의체((informal agreement)이며, 둘째, 회원국 회의에서 통제지침과 품목 등이 결정되면 각국이 자율적 판단에 따라 자국의 법령으로 통제 품목 및 지역을 반영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결정한 처벌조치를 시행하며, 셋째, 우려 국가 및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자간 수출통제체제는 당초 회원국들의 상이한 경제발전수준과 산업구조를 고려한 측면이 있었으나 회원국들의 국가별 특수성과 자율성을 강조한 나머지, 결국에는 국제 비확산협약과 같이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홍익표, 2004: 45; 전봉근, 2005: 2-4).

<표 2-2> 다자간 수출통제체제

구 분	설립 년도	참여국 수	한국 참여 년도	설립배경
핵공급국그룹 (NSG)	1978	45	1995	'74년 인도의 핵실험, 유가상승에 따른 국제사회의 원자력 도입분위기 확산
호주그룹 (AG)	1985	40	1997	'84년 유엔특별사찰단에 의해 이라크가 대 이란전에서 화학무기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
미사일기술 통제체제 (MTCR)	1987	34	2001	'70년대 말과 '80년대 초 국제사회의 미사일 개발 움직임
바세나르협약 (WA)	1996	40	1996	'94년 COCOM의 해체, 재래식무기 및 이중용도품목·기술확산 방지

주: 1) 참여국 수는 2007년 1월 기준.

자료: 전략물자관리시스템, <http://www.yestrade.go.kr>(검색일: 2008. 5. 29); 전봉근, 2005.

국제적 비확산체제와 함께 세계 주요 각국은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규율할 국내 법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시행해 오고 있다. 미국은 국제적으로 WMD의 비확산을 주도하는 한편, 국내적으로 수출관리법(EAA: Export Administration Act)과 무기수출통제법, 원자력법, 핵비확산법 등의 다양한 법규를 통해 관련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특히, EAA의 하위 규정으로 미국 수출통제제도의 주요 법적 근거를 이루는 수출관리규정(EAR: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은 미국산 제품(commodity), 기술(technology), 소프트웨어(software)가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되어거나 사용된 외국산 제품을 재수출하는 경우 미국 상무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국제질서로 이해하고 국제 수출통제 체제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국내적으로는 외환법을 기본 골자로 하여 WMD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개발, 제조, 사용 및 저장 방지 및 재래식 무기 축적 방지를 도모하고 있으며, 특히 무기류에 대해서는 ‘수출 금지 3원칙’(1967)에 의거 공산주의 국가, UN 안보리 결의에 따라 무기 수출이 금지되고 있는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 또는 분쟁의 우려가 있는 국가 대해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한국무역협회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 2006: 143-156)

중국은 1980년대 중반 이래 무기와 이중용도 기술의 주요 공급자로 부상하면서 국제사회의 의혹을 받아왔으며 1990년대 NPT가입(1992), CWC가입(1993)에도 불구하고 이란, 파키스탄 등에 통제물자를 공급하고 핵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한 혐의로 미국의 경제제재와 그에 따른 중미관계의 악화를 겪어왔다. 그러나 중국은 현 중국 수출통제제도의 기본법인 대외무역법을 1994년 제정한 이래로 생화학물질, 군수물자 수출통제조례와 이중용도 핵물질 및 관련기술 수출통제에 관한 각 조례를 제정하였고, 2002년 8월에는 미사일 및 관련 품목과 기술에 관한 통제조례와 통

제품목 리스트를 제정, 발표함으로써 선진국에 근접한 법적 체계를 구축해나가고 있다. 또 2003년 1월 캐치올(Catch-all) 제도를 도입하고, 2004년 대외무역법 개정 및 ‘민간물자기술에 대한 수출허가행정에 관한 임시조치’에 의하여 무형기술의 이전도 통제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국내 수출통제제도를 한층 강화해오고 있다(Li ZenXin, 2007: 14-22).

2.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최근 동향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기존의 국제협약과 통제체제의 경우에서 보듯 실효성이 미흡하고 회원국들이 자발적으로 이행하는 성격에 머물고 있지만, 9.11테러 이후 최근 동향을 보면 테러방지를 목적으로 이러한 통제체제를 국제법, 국내법적으로 그 규제력을 강화하려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첫째, 유엔 안보리는 2004년 4월에 결의안 1540호를 채택하여 모든 국가들이 전략물자의 생산, 운송, 사용 등에 대하여 효과적인 국내통제체제를 구비·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동 결의안은 기본적으로 유엔 회원국 내 비국가단체에 대한 통제장치를 요구한 것으로, 전략물자의 국제적 교역을 통제하는 다른 국제 수출통제체제와 차별화되며 상호 보완적 성격을 지닌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선진국들은 회원국간 감시정보를 교환하거나 전략물자의 불법수출에 관련된 기업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취약한 수출통제체제 국가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해서는 통관절차를 강화하는 등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자발적 준수를 강요하고 있다(이지석, 2006: 369).

둘째, 미국은 확산방지구상(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을 통

해 대량살상무기 확산 저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PSI는 미국의 단순한 정치공세가 아니라 구체적 목표와 실천의지가 담긴 WMD 제거 정책이다(전성훈, 2007: 3).

PSI는 기존의 협약과 다자수출통제체제의 틀 밖에서 또는 이와 연계하여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실천하며, 특히 WMD 및 운반수단 관련 물자의 수송을 육상, 해상, 공중에서 차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PSI는 기구가 아니라 활동 그 자체이므로, 기존의 틀 외에서 다양한 차단 활동을 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고 있는 반면 법적인 난점도 적지 않다. 예컨대 영해에서의 차단활동은 참여국의 국내법 적용으로 가능하나, 공해에서의 차단 활동은 '자유항행권'으로 인하여 선적국과 승선협약을 체결할 경우에 한하여 승선과 수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압류는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밖에도 PSI는 서방진영 위주로 구성된 회원국의 지역적 확대, 중국의 참여, 정보 교류 및 활동 대상의 확대 등의 과제를 안고 있는 바, PSI는 새로운 개념의 국제적 활동으로 그 확대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각국이 세관과 통관절차에 의한 수출통제가 강화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무역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세계 무역거래에 효율성을 도모하는 동시에 보다 안전한 해상 무역 환경을 조성하고자 컨테이너안전구상(CSI: 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제안하고 있다. 미국 세관은 컨테이너가 미국에 도착하기 전 선적지에서 미리 안전검사를 한다는 취지에 따라, 세계 주요 무역항과 협력협정을 체결하여 선적지에서 사전 통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세계 6대 항구인 부산항과도 협력협정을 체결하고, 2003년 8월 한·미 합동세관사무소를 개설(미국 세관원 5명 상주)하여 미국항 컨테이너에 대하여 사전 통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통관 측면에서 무역거래 원활화(효율성)과 전략물자 수출통제(안전성)에 부응해야 하는 이러한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이 두 가지 요구를 동시

에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기업인증제가 모색되고 있다. 그 사례로는 미국의 C-TPAT(Customs-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EU의 공인경제운영자(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등이 대표적이다(안재진, 2007). 이 제도는 개별 국가나 지역 차원에서 인증제가 실시되거나 실시될 예정이지만, 세관통관 분야의 표준화가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국제적인 인증제로의 발전 가능성은 크다고 할 것이다. 허가와 집행의 전 영역에 걸친 진정한 의미의 국제 인증제도는 각국 수출통제체제의 분산적 성격으로 인해 본격적으로 논의되지는 못하고 있으나, 다만 국별 차원에서 내부 자율수출통제체제의 구축 및 강화의 형태로 진전되고 있다(이석기, 2006: 40).

Ⅲ.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1. 전략물자 수출통제관련 법제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1987년 9월에 체결된 ‘한-미 전략물자 및 기술자료 보호에 관한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n the Protection of Strategic Commodities and Technical Data)의 국내적 실시를 위하여 대외무역법시행령과 대외무역관리규정에 근거규정이 마련됨으로써 도입되었다. 1992년 12월에는 대외무역법에 제28조의3(戰略物資의 輸出許可등)을 신설하여 전략물자 통제제도의 근거를 보다 확고히 하였으며, 2003년 1월부터는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제리스트(Control List)상의 통제품목 이외의 물품과 기술이 대량파괴무기 등의 개발 등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출을 제한하는 캐치올(Catch-all)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법제는 먼저 일반법적 성격을 갖는 대외무역법과 동법 시행령이 있으며, 이에 의한 전략물자·기술 수출입통합고시에서는 수출통제 관련 구체적인 규정으로 전략물자·기술 해당여부의 확인 및 판정, 수출통제품목, 전략물자 수출지역, 전략물자 수출통제 지침 등을 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원자력, 전략기술, 주요방산물자, 남북한 반·출입 물자, 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에 대해서는 원자력법, 기술개발 촉진법, 방위사업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이 마련되어 있다.<표 3-1>

<표 3-1>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수출통제관련 법제

법 률	내 용
대외무역법	전략물자수출입의 일반법. 시행령과 통합고시에서 세부업무 규정
원자력법, 기술개발 촉진법	원자력분야, 전략기술 수출입관리
방위사업법	방산물자 중 주요방산물자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한간 반·출입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대한 법률	화학무기금지협약, 생물무기금지협약에 대한 정부의 이행책임관련 내용 규정

자료: 전략물자관리시스템, <http://www.yestrade.go.kr>(검색일: 2008. 5. 29)

2. 대북 전략물자 반출 규정 및 절차

남북한은 양자간의 관계가 국가간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보면서, 남북한간 교역이 국가간의 무역이 아니라 민족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임을 규정하는 제도적 장치(남북교류협력 등)를 마련해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물자에 관하여는 위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제13조 및 14조, 동법 시행령 26조,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통일부고시 제2005-5호) 제3조1)에 따라 대외무역법과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고

- 1)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제3조(승인을 요하는 반출·반입) ①남북교역대상물품중 반출·반입함에 있어 승인을 요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대외무역법 제3장 수출입거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수출입공고, 수출입별도공고, 통합공고, 전략물자수출입공고에서 수출·수입에 허가·승인·추천·확인·증명 등의

시를 준용하여 그 반출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않고 물품을 반출한 경우에는 동법 제27조에 의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2007년 8월에는 대북 전략물자의 반출승인, 승인에 대한 기준 및 절차, 경제특구에 반출한 전략물자의 사후관리 등 일련의 절차를 내용으로 하는 「대북 전략물자의 반출승인절차에 관한 고시」(통일부고시 제 2007-8호)를 제정, 시행함으로써 대북 전략물자 반출승인과 절차에 있어서 보다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대북 전략물자 반출승인의 기준으로 ① 반출품의 기술수준과 군사적·외교적 민감성, ② 민간부문에서의 사용 여부, ③ 최종사용자와 최종사용 용도에 대한 신뢰성, ④ 제3국으로 재수출될 가능성, ⑤ 반출자, 반입자 또는 최종사용자가 전략물자 거래부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5가지로 명시해 놓고 있다.

전략물자의 대북 반출승인신청 시 통일부장관은 위 기준에 의해 전략물자를 심사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전략물자가 평화적 목적에 이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반출을 승인한다.²⁾

통일부장관은 반출승인 후에도 ① 전략물자반출승인서를 발급한 후 미리 알았더라면 승인하지 아니하였을 새로운 사유가 발견된 경우, ② 전략물자반출승인서를 발급한 후 전략물자 반출승인의 취소 또는 그 효력의 정지가 불가피할 정도의 국제정세의 변화 또는 안보상 새로운 수출제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략물자의 반출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전략물자반출승인을 받은 자는 당해 물품을 반출한 이후 10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전략물자반출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반출품이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입증 서류, 반출승인 관련 서류

제한이 있는 물품

2) 「대북 전략물자의 반출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8조 1항.

등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이후에도 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관광지구를 비롯한 북한 경제특구 등에 전략물자를 반출한 자 또는 전략물자의 최종사용자는 관리책임자의 지정 및 관리대장의 비치, 분기별 관리내역 보고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³⁾

3) 「대북 전략물자의 반출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10조, 제12조, 제13조.

IV. 불법수출 실태

1. 주요 검거사례

2007년 10월 국회에 제출한 대외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이후 국내·외 기업들이 북한으로 전략물자를 반출하려다 국정원에 적발된 사례는 총 1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3건은 국내기업들의 대북 반출 시도였고, 나머지 12건은 외국기업의 사례였다.⁴⁾

아래에서는 2007년 12월 이후 2008년 6월까지 경찰청에 검거된 전략물자 불법수출 사례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 軍 전략물자 불법수출 피의자 9명 검거(경찰청 일보, 2007.12.14)

【개 요】

경찰청에서는 군(軍) 전략물자(전투훈련장비, 방독면, 황화나트륨)를 분쟁지역 이라크 등 15개국에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수출한 조○○ 등 9명 검거, 불구속 송치

【범죄 사실】

대상자들은 대기업 산하 기업체 및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자들로, 방위사업청장·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04. 4 - 2007. 11월간 97회에 걸쳐, 군 전략물자인 ‘전투훈련장비’, ‘방독면’, ‘방탄헬멧’, ‘황화나트륨(1차대전 당시 독가스로 사용)’ 등 71억원 상당을 이라크 등 수출제한 국가(15개국)에 불법수출

4) 국정원이 2007년 10월 16일 국회에 제출한 대외비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5년 8월 H사는 북한에 군사용으로 전용이 가능한 ‘산업용 공기압축기’ 반출을 추진하다가 국정원에 적발돼 반출이 차단됐고, 같은 해 12월에는 G사가 우라늄 핵개발에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산업용 원심분리기’ 반출을 추진하다 적발됐다. 또 2006년 8월에는 북한 민족경제연합회가 중국에서 휴대폰 소프트웨어 공동개발을 추진하던 국내기업 V사가 부도나 연구가 중단되자 체불입금을 받기 위해 노트북 컴퓨터 10대를 압류, 대북 반출을 시도하다 적발돼 반출이 차단됐다. 『한국일보』, 2007. 10. 16.

【적용법조 및 조치사항】

- 대외무역법 제53조 제2항 2호, 제19조 제2항, 방위사업법 제57조 제2항, 제62조 제2항

- 2007. 12. 14일 서울중앙지검 불구속기소 의견 송치

‘대테러 안보’ 차원에서 전략물자 불법수출사범 수사활동 강화

● 전략물자 불법수출 피의자 검거(경찰청 일보, 2007.12.20)

【개 요】

강원청에서는 생화학무기 제조 등에 전용 될 수 있는 전략물자를 싱가포르 등 2개국에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수출한 이○○을 검거

【범죄 사실】

피의자는 강원도 원주에서 특수밸브를 생산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2005. 11 - 2007. 11월간 21회에 걸쳐, 전략물자인 ‘PFA Lined Diaphragm Valve’(불소 고분자 다이어프램 밸브: 내부식성이 강해 『화학 · 생물무기 제조/ 운반설비에 이용가능한 전략물자) 816개를 당국의 허가 없이 수출제한 ‘나’지역 싱가포르 · 대만에 2억2천5백만원 상당을 수출

【적용법조 및 조치사항】

- 대외무역법 제53조 제2항 제2호, 제19조 제2항

-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 예정

● 우라늄 원심분리기 부품’ 불법수출 피의자 검거(경찰청 일보, 2008.1.4)

【개 요】 경남청에서는 고농축 우라늄 원심분리기 부품으로 사용되는 ‘철강 압출봉’을 허가받지 않고 이란내 핵개발 · 제조 우려업체로 지정된 「NP Company」의 자회사로 불법 수출한 무역회사 대표 정○○을 검거

【범죄 사실】

- 2006. 3. 3일 아랍에미레이트에 본사를 둔 <주>PDRKO 인터내셔널社 한국지사를 설립 후, 이란으로 수출될 경우 ‘고농축 우라늄 원심분리기’ 부품으로 사용되는 등 핵무기 프로그램에 전용가능성 등을 이유로 상황허가 대상품목으로 지정된 ‘STAINLESS STEEL ROUND BARS (철강 압출봉)’ 4개(시가 5,467,769원)를 국내에서 구입하여, 2007. 8. 18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국제사회로부터 대량살상 무기 개발·제조 우려업체로 지정된 이란 「NP Company」社에 불법 수출한 혐의

【적용법조 및 조치사항】

- 대외무역법 제53조 제2항(5년이하 징역, 물품가격 3배 이하의 금액 상당 벌금)
-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 예정

● 전략물자 불법수출사범 1명 불구속(경찰청 일보, 2008.4.3)

【개 요】 서울청에서는 생화학 무기 생산에 이용 가능하여 전략물자로 지정·고시된 ‘페르멘터(Fermenter, 발효기: 식품을 발효시키는데 사용되는 기계로, 유사 시 생화학무기 생산에 이용될 수 있어 ‘전략물자’로 지정·고시된 품목)’를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수출한 피의자 1명 검거

【범죄 사실】

피의자는 2005. 12 - 2007. 12월간, 전략물자인 ‘Fermenter(발효기)’를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 없이 수출제한 국가인 중국·베네수엘라 등 2개 국가에 10대, 시가 6억원 상당액을 불법 수출한 혐의

【적용법조 및 조치사항】

- 대외무역법 제19조 제2항, 제53조 제2항
- 불구속 송치

● 전략물자 ‘방탄복 등’ 불법수출사범 4명 불구속(경찰청 일보,

2008.4.18)

【개 요】 경찰청은 군 전략물자인 방탄복, 방탄헬멧, 황화나트륨 등을 당국의 허가 없이 수출제한 국가인 아프카니스탄, 베트남 등에 불법 수출한 피의자 4명, 불구속 송치(부산청과 공조수사)

【범죄 사실】

- 2004. 5월부터 피의자 윤○○은 84회에 걸쳐 전략물자인 방탄헬멧, 방탄복, 무전기안테나 등 시가 73억 상당을 방위사업청장의 허가 없이 수출제한 국가인 아프카니스탄 등에 불법 수출한 혐의

- 2004. 4월부터 피의자 배○○은 14회에 걸쳐 생화학무기 제조에 사용되는 전략물자인 시안화나트륨, 황화나트륨 등 시가 4천만원 상당을 지식경제부 장관의 허가 없이 베트남에 불법 수출한 혐의

【적용법조 및 조치사항】

- 대외무역법 제19조 제2항(수출허가), 제53조 제2항(벌칙)

○ 불구속 송치 예정

● ‘전략물자’ 불법 수출사범 2명 검거(경찰청 일보, 2008.5.1)

【개 요】 충남청에서는 핵연료 관련 전략물자를 당국 허가 없이 수출한 정○○ 등 2명 검거

【범죄 사실】

2006. 1월부터 핵연료 우라늄 정제에 이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 ‘플루오르화수소’·‘불화수소암모늄’을 제조, 지식경제부장관의 수출허가 없이 중국·대만 등 국가에 83회에 걸쳐 40억원 상당 불법수출

【적용법조 및 조치사항】

- 대외무역법 제54조 제2호

- 2008. 4. 30일 대전지검 공주지청 불구속 송치

● ‘전략물자’ 불법 수출사범 2명 검거(경찰청 일보, 2008.5.4)

【개 요】 서울청에서는 로켓 발사추진대 등 군용물자에 전용 가능하여 전략물자로 지정·고시된 ‘그라인더(Grinder, 판넬연마 가공기계)’를 관계부처의 허가없이 불법 수출한 반도체 생산업자 등 2명 검거

【범죄 사실】

피의자는 2007. 7 - 2008. 2월간, 전략물자인 ‘Grinder(판넬연마 가공설비: LCD panel 연마 가공기계로 유사시 로켓 발사추진대 등 군용물자에 전용될 가능성이 있어 ‘전략물자’로 지정·고시된 품목)’를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 없이 중국·대만 등 국가에 5회에 걸쳐 시가 36억원 상당액을 불법 수출한 혐의

【적용법조 및 조치사항】

- 대외무역법 제53조 제2항, 제19조 제2항, 제57조(양벌규정)
- 2008. 5. 14일 서울중앙지검 불구속 송치

● ‘전략물자’ 불법 수출사범 2명 검거(경찰청 일보, 2008.5.20)

【개 요】 부산청에서는 생·화학무기 생산 및 핵 우라늄 농축작업이 가능한 전략물자인 진공펌프 등을 관계부처의 허가 없이 핵 확산 우려국인 인도 등에 불법 수출한 생산업체 대표 등 2명 검거

【범죄 사실】

- 피의자 이○○는 2004. 4 - 2008. 2월간, 생·화학 무기제조 및 핵 농축 작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 진공펌프를 272회에 걸쳐 핵 확산 우려국인 인도 등 20여개 국가에 불법수출

- 피의자 장○○는 2006. 1 - 2007. 11월간, 전략물자인 진공펌프 18개를 10여회에 걸쳐 말레이시아 등에 불법 수출

【적용법조 및 조치사항】

- 대외무역법 제53조 제2항, 제19조 제2항, 제57조(양벌규정)
- 2008.5.23일 부산지검 불구속 송치 예정

● ‘전략물자’ 불법 수출사범 5명 검거(경찰청 일보, 2008.5.21)

【개 요】 경남청에서는 당국 허가 없이 전략물자를 수출한 김○○ 등 5명 검거

【범죄 사실】 2005. 1 - 2008. 2월간 전략물자인 ‘조정밀공작기계’류 9개 제품을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 없이, 중국·인도 등 11개 국가에 172회에 걸쳐 불법 수출한 혐의

【적용법조 및 조치사항】

- 대외무역법 제53조 제2항, 제19조 제2항, 제57조 제1항
- 2008. 5. 22일 창원지검 불구속 송치 예정

● ‘전략물자’ 불법 유출사범 8명(4건) 검거(경찰청 일보, 2008.6.9)

【개 요】 경북청에서는 전략물자를 불법 수출한 신○○ 등 8명 검거

【피의자 및 범죄 사실】

- 신○○ 등 2명은 2005. 6 - 2007. 12월 사이 군사용품의 부품 코팅에 전용 가능한 전략물자인 ‘진공코팅 설비’를 핵확산 우려국인 인도 등 7개 국가에 불법수출

- 모○○ 등 2명은 2005. 1 - 2005. 6월 사이 미사일 모터가공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전략물자인 ‘텅스텐 메탈 파우더’를 수출제한 지역인 인도 등 5개국에 8회에 걸쳐 5억원 상당 불법수출

- 안○○ 등 2명은 2005. 1 - 2006. 12월 사이 강화섬유 제조 및 항공가스터빈 엔진 등에 사용되는 전략물자인 ‘불 밸브’를 허가 없이 수출제한 지역인 대만·중국 등에 7회에 걸쳐 8억원 상당 불법 수출

- 이○○ 등 2명은 2005. 1 - 2006. 9월 사이 핵무기 프로그램 전용 가능한 상황허가 대상품목 전략물자인 ‘압출봉 바(BAR)’를 적성국가인 이란에 4회에 걸쳐 불법 수출

【적용법조 및 조치사항】

- 대외무역법 제53조 제2항, 제19조 제2항 및 3항, 제57조

- 2008. 6. 10일 대구지검 불구속 송치(예정)

● 전략물자 불법 유출사범 2명 불구속(경찰청 일보, 2008.6.12)

【개 요】 울산청에서는 생화학 무기 원료의 제조·운반장치로 사용가능하여 전략물자로 지정·고시된 '티타늄튜브(TITANIUM TUBE)'를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수출한 피의자 2명 검거

【피의자 및 범죄 사실】 피의자들은 2005. 5. 9 - 2007. 3. 23일간, 화학·생물무기의 원료가 되는 부식성 전구물질과 작용제를 제조·운반하는 장치로 사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인 '티타늄 튜브(TITANIUM TUBE, 해수를 이용하는 열교환기나 화학공장의 주요 배관 공재)를,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 없이 이란·인도 등 2개 국가에 시가 3억 5천만원 상당액을 불법 수출한 혐의

【적용법조 및 조치사항】

- 대외무역법 제54조 제2호, 제21조 제1항
- 2008. 6. 12일 불구속 송치

2. 전략물자 불법수출범죄 대응에의 함의

앞서 살펴보았듯이 2003년 이후 2007년 10월까지 국내·외 기업들의 대북 반출 적발(국정원)만 총 15건이 있었고, 2007년 12월 이후 2008년 6월까지 약 7개월간 경찰 측 단속 결과에도 대북 반출 이외 전략물자 불법수출이 산업화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특히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대외무역법(일부개정 2007.1.3 법률 제8185호)이 2007년 4월 4일 발효되고 그 시행령 또한 개정되어 동시에 시행되고 있었던 상황에서 나온 결과여서 더욱 불

법수출 차단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⁵⁾

경찰청에 의해 검거된 불법수출사범은 <표 4-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지역분포면에서 특히 산업단지가 형성된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즉 전체 검거 건수 16건 중 경북, 대구, 울산, 경남, 부산 등지에서 10건이 발생하여 전체 불법수출범죄의 60% 이상이 산업화 선도지역인 경남북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바, 이들 지역의 정보수사부서에서는 부품·기계류, 화학제품류, 섬유소재류 등을 중심으로 한 전략물자의 제조 및 유통, 수출입 동향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표 4-1> 전략물자 불법수출사범 검거 현황(2007.12 - 2008.6)

단위: 건수

경찰청 (본청)	서울청	강원청	충남청	경북청	대구청	울산청	경남청	부산청	합계
2	2	1	1	4	1	2	2	1	16

자료: 경찰청

아울러 軍 전략물자 불법수출 검거사례에서 시사되듯이 불법수출 통제

5) 2007년 1월 개정 대외무역법은 제도 이행 대상을 종전 수출업자에서 제조업체, 수입업자, 중개업자로 대폭 확대했다. 특히 수출허가의 경우 종전 “가” 지역은 수출거래보고서 제출로 수출허가를 대신하였으나 이를 폐지하고 “가” 지역으로 전략물자가 수출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수출업자와 제조업체, 수입업자, 중개업체 모두 자사의 취급품목이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되, 이를 확인 받지 않으면 해당 수출·중개·수입·제조업체에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였다. 또한 제조·수입물품이 전략물자임이 확인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으면 역시 1000만원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제3국간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전략물자를 국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상대방에 서면 통보해야 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이와 함께 규정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었는데, 수출허가 위반에 대한 처벌은 종전 '5년 이하 징역 또는 거래가액 3배 이내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거래가액 5배 이내 벌금'으로 높아졌다. 또한 수출허가 위반자에 대한 무역금지 조치도 1년에서 3년까지로 늘어났다.

는 군 당국 등 유관기관간 협력과 전문성 확보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전략물자 불법수출과 관련된 국정원, 검찰, 기무사 등의 정보수사기관과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전략물자 불법수출의 국제성, 품목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전략물자 여부의 정확하고도 신속한 판정을 위한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수사요원들의 양성과 전문교육, 정보수집 및 검거활동 과정에서 각 분야별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체 사건이 구속이 아닌 불구속 송치로만 진행된 것에서 시사하듯이 수출업자들이 수출규제 관련규정을 올바르게 숙지하지 못해 규정을 위반한 측면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단속 이전 단계에서 폭넓은 홍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V. 결 론: 불법수출범죄 대응방안

본 연구는 범죄대응체계의 제도화 모델(Institutionalization Model of Crime Response System, 이하 IMCRS)에 따라 경찰청을 중심으로 한 불법수출범죄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모델에서는 범죄대응체계의 제도화를 “범죄대응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으로서 공식적인 법규와 조직, 구조화된 절차 및 관행을 갖추어 나가는 것”으로 정의하고, 그 제도화 과정을 문제 발생과 쟁점의 확인, 법규와 조직 등의 제도를 마련하는 제도 설계, 범죄대응을 위한 절차 및 관행을 제도화하는 집행, 그리고 환류에 의한 순환과정으로 본다(정웅, 2007b). 본 연구에서는 IMCRS에 따른 불법수출범죄 대응방안의 구체적 내용으로 제도 설계(institutional design) 단계에서 법규의 정비와 전문수사부서 확보, 제도 집행(implementation) 단계에서 감시단속시스템의 고도화 및 이해당사자간 협력체계의 구축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법규의 정비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는 탈냉전 이래 새로운 세계 무역질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또 세계 주요 국가들은 수출통제를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 일정기간 수출입 활동 금지, 부적격자 리스트 상호 공유 등 수출통제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전략물자 불법반출의 사례에서 보듯이 위반기업이 향후 빈발할수록 해당기업에 대한 제재와 함께 한국의 국가 신뢰도는 추락하게 되고, 결국 안정적인 국제교역의 진전과 활성화는 어렵게 된다. 따라서 전략물자 불법수출범죄의 효과적 통제를 위한 법제 정비는 국제무역

의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전제조건이 된다.

전략물자 수출의 효과적 통제를 위한 국내법적 제도정비를 위해 정부는 2007년 1월 대외무역법을 개정하고, 동년 4월 4일 개정된 시행령을 공포하여 시행하고 있다. 개정 대외무역법에서는 전략물자에 대한 새로운 국제적 통제규범으로 평가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제1540호에서 정하고 있는 유엔 회원국의 준수사항을 반영하여, 개정 대외무역법은 전략물자의 이동중지 및 중개허가 규정 등을 신설하였다.⁶⁾

즉 최근 대량파괴무기의 제조 등을 위한 전략물자의 획득경로가 복잡·교묘하여짐에 따라 국제사회는 국제연합안보장이사회 결의문 등을 통하여 각 국가에 대하여 기존의 직접적 수출에 대한 통제뿐만 아니라 경유·환적(換積) 및 중개 등에 대하여도 효율적으로 통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바, 국내 물품이 불법적으로 수출된 경우와 국내 항만 및 공항을 경유하거나 국내에서 옮겨 싣는 외국 물품에 대한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의 협조요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략물자의 이동을 일시적으로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내국인이 제3국에서 다른 제3국으로 전략물자를 중개하려는 경우에도 중개할 때마다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⁷⁾

또한 국내 물품의 직접 수출 외에 내국인의 전략물자 중개에 의한 탈법위험 방지를 위해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제41조와 제42조에 각각 전략물자의 중개허가 신청 및 중개허가의 기준 등을 마련하였다. 다만 경유·환적 등에 경우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세부 규정이 미비한 바, 전략물자 이동중지명령을 할 수 있는 관계 행정기관의 범위, 이동중지명령 및 이동중지조치의 기간과 방법 등에 대한 규정 정비와 그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6) 대외무역법[일부개정 2007.1.3 법률 제8185호] 제21조의5 및 제21조의6 참조.

7) 2007.1.13일 개정 대외무역법[법률 제8185호]의 제21조의5 및 제21조의6은 2008.2.29일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령으로 그 내용을 현재 대외무역법[법률 제8852호] 제23조 및 24조에 담고 있다.

2. 전문수사부서의 확충

생산과정의 글로벌화 및 무역규모의 확대, 무역거래의 전자화에 의해 국제통상 환경이 변화하고 그에 따라 무역관련 범죄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 특히 최근 FTA를 증으로 한 자유무역주의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복잡한 무역 관련 특례규정을 악용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대형화,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는 국제성 무역범죄에 대응하여 전문수사조직을 설치할 것이 요구되며 이러한 전담부서에서 수출입물품과 관련한 원산지규정위반 범죄, 지적재산권침해 범죄 등을 망라한 불법 무역범죄를 전담하는 한편 전략물자 불법수출범죄 역시 여기서 집중적으로 담당해야 할 것이다. 또 이의 운용을 위해서는 전문수사요원들의 양성도 필수적이며 여기에는 국제무역 및 금융경제관련 법제도의 이해, 대외경제정보의 수집 및 분석, 수사기법 등에 대한 교육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전문수사부서의 운용에서 또 하나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은 전략물자의 정확한 판정을 위한 전문가풀의 확보라 할 수 있다.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기술분석에 대한 전문성과 복잡성 때문에 특정 이중용도품목의 전략기술 해당여부와 군사적 전용 가능성 판단에 대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전략물자에 대한 잘못된 판정은 관련 국가들에게 치명적인 안보상의 위협을 증대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각 분야별 전문가를 확보하여 전략물자 판정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전략물자 판정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한국무역협회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 2006: 196-197).

3. 감시단속시스템의 고도화

전략물자 불법수출 단속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전략물자 수출규정 위반물품에 대한 과도한 단속이 정상적인 무역활동을 억제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위험관리기법(risk management)을 도입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즉 전략물자 수출품목과 업체를 고위험(high risk) 및 저위험(low risk) 분야로 구분하여 이중 우범성이 높은 품목이나 우범업체들을 대상으로 선별 단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략물자 불법수출범죄에 대비하여 경찰은 한정된 조직과 인력 하에 범죄감시시스템을 고도화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단속체계를 갖추어 나가야 하는 바 이를 위해서는 미시적인 측면에서 과학적 수사기법을 개발하는 한편 유관기관을 포괄한 거시적 측면에서 감시단속시스템을 마련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특히 요구되는 것은 전략물자 수출과 관련된 탈법행위 적발 및 단속에 필요한 정보를 적실성(relevance), 정확성(accuracy), 적시성(timeliness)을 갖추어 수집(collection), 생산(production)해 낼 수 있는 전략물자 정보시스템의 구축이다.

4. 이해당사자간 협력체계의 구축

전략물자 불법수출범죄의 대응체계 제도화를 지향하며 무엇보다 강조되어야 할 것은 이해당사자간 강력한 동반자관계(partnership)의 형성에 의한 상호 협력(collaboration)과 네트워크(network)의 구축이다. 즉 경찰청 이외에도 정부의 유관기관 및 민간기업 등이 모두 전략물자 불법수출범죄 대응에서 현실적 이해당사자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이들의 참여·협조는 범죄대응체계의 제도화에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범죄대응체계의 제도화와 수출통제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략물자 불법수출과 관련된 경찰청, 국정원, 검찰청, 기무사 등의 정보수사기관은 전략물자 불

법수출의 국제성, 복잡성에 대비하여 유관기관간 협력체계를 갖추어나갈 필요가 있다.⁸⁾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예컨대 전략물자 불법수출 차단을 겨냥한 상호 정보제공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정례화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 전략물자 수출에서의 불법행위 발생 이전단계에서부터 무역거래자들의 탈법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새로운 수출통제 제도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법규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기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기업의 자율적 법규준수(Informed Compliance)체제를 도입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한-미간 긴밀한 협의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1987년 체결된 한-미 전략물자 및 기술자료 보호에 관한 양해각서에 의하면 한국 정부에 의해 통제되는 전략물자의 목록은 미국과의 상호협의(mutual consultation)에 의하여 결정된다. 특히 한국정부는 미국산 전략물자를 한국 기업이 재수출할 때, 미국법상 미국정부의 재수출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미국정부의 서면동의 하에 재수출되도록 할 것을 합의하였다,

테러지원국으로 분류된 북한의 경우 최종완제품에 편입되어 있는 물품이 미국산이거나 미국산 부품이 상품가격대비 10%를 초과하여 포함된 경우에는 EAR상의 규제대상 품목이 되어 미국 상무부의 수출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는 미국산 소프트웨어와 기술이 포함된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한국무역협회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 2006: 199.). 예컨대 한국통신(KT)는 2005년 3월 북한 조선체신회사와 개성공단 통신부속합의서를 체결하고 개성공업지구 직통전화 연결을 위해 2005년 7월 미 상무부에 전송장비 7개 반출품목의 EAR 저축 여부 심사를 요청했으나 그 승인이 계속 지연되어 오다가 4개월만인 지난 11월 미국 상부무로부터 반

8) 대외무역법 시행령(제30조 제5항)은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관련 정보수사기관을 1.국가정보원, 2.검찰청, 3.경찰청, 4.국군기무사령부로 규정하고 있다.

출승인을 받아냈다(연합뉴스, 2005. 11. 17). 또 에스원은 개성공단 통행·통관 관련 무선인식기술(RFID :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시스템 구축 사업 시행자로서 관련 장비에 대한 대북반출 허가를 신청하여 2006년 12월 20일 미 상무부의 EAR license를 발급받았다.⁹⁾

북한의 미사일발사 및 핵실험으로 미국의 대북제재가 강화되고 대북관계가 악화될수록, 그리고 향후 개성공단사업이 확대되고 참여기업 수와 이중용도 반출품목이 증가할수록 미국 수출통제법규의 역외적용¹⁰⁾ 또한 강화될 것이며 전략물자반출문제로 사업승인이 거부되거나 지연될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최승환, 2007: 15).

미국 수출통제법규에 대한 엄격한 적용과 위반기업에 대한 제재강화는 남북교역 참가 기업에 상당한 피해를 주며 한국의 국가신뢰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국과 긴밀한 협의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전략물자 반출의 효과적 통제와 남북교역의 안정적 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우리 정부와 기업은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를 미국 등 선진국에 의한 또 하나의 비무역장벽(Non-Tariff Barriers)으로 이해하는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전략물자 불법수출 통제활동을 적극 전개함으로써 남북교역 및 세계 선진국과의 교역을 더욱 안정적으로 발전시켜나도록 하는 능동적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며, 특히 경찰청은 수출통제제도의 안착과 경제안보 확보를 위해 불법수출범죄 차단을 겨냥한 치안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9) 허가신청 품목은 심사PC, 미들웨어서버, 네트워크 장비, 운영체제 등 총 17개 품목(하드웨어 12종, 소프트웨어 5종)이었다. 『통일부 보도자료』, 2006. 12. 26.

10) 미국수출관리법상의 전략물자통제제도를 위반한 외국기업에 대해 미국정부가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은 미국국내법을 역외적으로 적용하는 것인데, 여기서 국내법의 ‘역외적용’(extraterritorial application)이란 자국영역밖에 있는 人, 物, 行爲에 대해 국내법을 확대 적용함으로써 ‘역외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베리아 가스파이프라인 사건”, “Toshiba-Kongsberg 사건”, “Floating Dock 사건”, “JAE-Iran 사건” 등에서와 같이 외국기업에 대한 미국수출관리법상의 제재는 해당기업에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피해를 초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최승환, 2005: 147-148).

참고문헌

- Li ZenXin(2007. 12. 4). 중국의 수출통제 및 대외활동. 한·중·일 공동 수출통제 세미나 자료집. 전략물자관리원.
- 안재진(2007). 국경안전 및 무역원활화를 위한 미국 및 EU의 공급망 보안제도 연구. 관세학회지, 8(3). 한국관세학회.
- 이석기(2006. 1). 전략물자 수출통제와 관련된 기업인증제 실시 전망과 대책. KIET산업경제. 산업연구원.
- 이지석(2006). 전략물자 통제제도의 분석과 전망. 관세학회지, 7(4). 한국관세학회.
- 전략물자관리시스템, <http://www.yestrade.go.kr>(검색일: 2008. 5. 29)
- 전봉근(2005).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의 현황과 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외교안보연구원.
- 전성훈(2007). 확산방지구상(PSI)과 한국의 대응. 통일연구원.
- 정 옹(2005). 남북한 관세협력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6(4). 한국관세학회.
- _____ (2007a). 북한의 탈사회주의 경제개방에 관한 연구. 통일전략, 7(2). 한국통일전략학회.
- _____ (2007b). FTA 시대 불법무역과 제도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 제21호. 치안정책연구소.
- 최승환(2005). 전략물자수출통제와 남북경협. 통상법률, 통권 제6호. 법무부.
- _____ (2007). 개성공단사업의 법적 의의와 전망. 안보통상연구, 1(1). 한국안보통상학회.
- 한국무역협회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2006). 수출통제. 서울: 박영사.
- 홍익표(2004. 10).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와 남북경협. 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책임연구보고서 2008-25

전략물자 불법수출범죄 대응방안

발행일 : 2008년 12월 26일

발행인 : 김 길 배

발행처 : **치안정책연구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동1길 29

홈페이지 : www.psi.go.kr

이 책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자에 게재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치안정책연구소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POLICE SCIENCE INSTITUTE